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November, 2025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뉴스 ■

신(新) 「중재법」 하에서의 중재지 제도의 적용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재보험조례」 집행 관련 문제 의견(3) 인쇄·발행
02. 국가지식재산국의 「특허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결정(국령 제 84 호)
03. 국무원 판공청의 「민간투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 통지 인쇄·발행
04. 개방 확대 지원 및 서비스 고품질 발전을 위한 10 대 혁신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

■ 법률 뉴스 ■

신(新) 「중재법」 하에서의 중재지 제도의 적용

2025년에 개정되어 2026년에 시행될 신(新) 「중재법」은 중국 중재제도 도입 이래 가장 중대한 체계적 개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여러 변화 가운데 특히 '중재지(仲裁地)' 제도의 도입은 제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중국 중재 실무는 국제중재에서 통용되는 중재지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채, 중재기관의 소재지나 심리 장소 등을 사실상 대체 개념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국제 상거래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모호성은 절차법의 적용, 법원 감독권의 범위,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 등 주요 문제에서 뚜렷한 제도적 한계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에서 중재지 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고, 중국 중재체계를 국제적 기준과 조화시키려는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국제중재에서 중재지는 절차법의 적용 기준을 정하는 제도적 중심축이다. 중재지는 송달 방식, 증거조사 절차, 절차의 병합 여부, 중재인의 권한 범위, 임시조치의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절차적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재기관의 규칙이 세부 사항을 규율하고 있더라도, 규칙이 해당 사안을 포괄하지 않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 중재지의 절차법이 최종적 준거 기준으로 작용한다. 중재판정의 취소 여부, 절차적 정의 위반 여부, 중재 진행 중 법원의 지원 가능성 등 핵심적 쟁점 역시 일반적으로 중재지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종전 법제에서는 중재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중국 법원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중재판정을 심리할 때 중재기관 소재지, 판정서 작성지, 심리 장소 등을 서로 다르게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이는 중재조항 해석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판정의 국제적 승인·집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중재지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독권을 중재지 법원에 일원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중재지는 판정의 국제적 집행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적 기준이 된다. 「뉴욕 협약」 체계하에서 각국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여부를 심사할 때 중재지 법률과 중재지 법원의 판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특히 중재지 법원이 절차적 정의에 따라 판정을 취소하거나 유지하였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재 기관 소재지나 심리 장소가 아니라, 중재지가 속한 법률체계가 판정의 최종적 법적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은 국제 집행 단계에서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존 제도적 모호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한다.

제도사적 관점에서 볼 때, 구(旧) 「중재법」에서 중재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외국 관련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중재기관의 국제화 수준도 낮았던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투자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제 프로젝트, 투자계약, 합작사업, 기술거래 등 복잡한 분쟁 위험을 수반하는 사안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지 제도의 부재는 이미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인식되고 있다. 신(新) 「중재법」은 당사자가 중재지를 명시적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였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기관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지는 중재기관 소재지나 심리 장소와 분리된 독립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종전 제도에서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결합' 구조도 해소되었다. 예컨대 중재기관이 베이징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중재지는 홍콩·런던·싱가포르 등으로 약정될 수 있으며, 중재심리가 상하이에서 진행되더라도 법적 의미의 중재지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은 중국 중재기관이 외국 관련 사건을 보다 폭넓게 처리하고 국제중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중재지 제도의 도입은 법기술적 차원을 넘어 중국 중재산업의 국제적 위상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이 제고됨에 따라 중국 중재기

관은 더욱 많은 외국 관련 분쟁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며, 국경 간 분쟁 해결 분야에서의 영향력 또한 확대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 법원 역시 외국 관련 중재 사건을 처리할 때 보다 일관되고 국제화된 심사 기준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정의 취소 사건이든, 승인·집행 사건이든 중국 법원이 국제적 주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심사 논리를 형성하게 되면, 이는 외국 당사자의 중국 선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법 시행과 함께 중국 중재제도는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심화와 정비의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중재지 제도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재보험조례」 집행 관련 문제 의견(3) 인쇄·발행 [\[별첨\]](#)
- 국가지식재산국의 「특허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결정(국령 제 84 호) [\[별첨\]](#)
- 국무원 관공청의 「민간투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 통지 인쇄·발행 [\[별첨\]](#)
- 개방 확대 지원 및 서비스 고품질 발전을 위한 10 대 혁신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 [\[별첨\]](#)

법무법인[유] 지평